
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9월 02일

남가좌제2동 주민센터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신 *화	신 *화 1970-08-30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래대로 (남가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8-20